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동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35
----------	--------

발의연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강동오, 고병준, 김승수, 백남환,
이상원, 치해영, 한선미, 최은하

1. 개정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이에 적극적인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헌혈자원봉사활동 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추가(안 제10조제1항)
- 나. 마포구 소재 학교 재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안 제10조제2항)

3. 관계법령

- 1) 「혈액관리법」 제4조
- 2)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3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10. 16. ~ 10.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 제4조”를 “제4조”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구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재학생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협회의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p>1. ~ 5. (생략)</p> <p>6. <u>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u></p>	<p>제8조(협회의의 기능)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제4조</u>----- -----</p>
<p>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u>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민이 마포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u>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u></p> <p>1. <u>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u></p> <p>2. <u>구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재학생</u></p>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관내 소재 헌혈 관리기관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구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내에서 헌혈한 재학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의약과 최선아
연 락 처	02-3153-9123

【관 계 법 령】

혈액관리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862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6. 22.] [대통령령 제33454호, 2023. 5. 9., 일부개정]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